

# EU 산림전용 규제 가이드북 Q&A

2023.11



# Contents



## 유럽연합 산림전용 방지 규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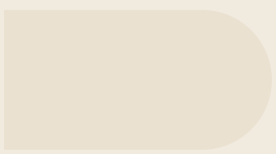
1. 입법 배경	06
2. 추진경과	07
3. 적용품목	08
4. 규제 내용	11



## EU 산림전용 방지 규정 Q&A









# 유럽연합 산림전용 방지 규정 개요

---

- 1. 입법 배경 06
  - 2. 추진경과 07
  - 3. 적용품목 08
  - 4. 규제 내용 11
- 
- Two light green rounded rectangular shapes are located in the bottom right corner of the page, one above the other.

# 01

## 입법 배경



- 2023년 6월 29일,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산림전용 방지 규정(EUDR)<sup>1)</sup>」을 발효하였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산림전용이 확대되면서 산림 면적이 축소되고 있고,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 감소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탄력성 감소 및 가속화, 물 부족 및 식량 생산량 감소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용어 알아보기 Q&A

#### Q. 산림전용(Deforestation)이란?

국내에서는 산림전용을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임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 사용 등과 같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산림청 산지전용 민원포털 <https://fcis.forest.go.kr>)

유럽연합 산림전용 방지 규정(EUDR)에서는 “인간의 유도(induce) 여부에 관계없이 산림\*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산림(Forest): 5m 이상의 나무와 10% 이상의 피복이 있는 0.5ha 이상 면적의 토지 또는 농업용이나 도시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이러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나무

- 유럽연합은 산림 손실을 줄이고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EU 산림 전략」과 「2020년 EU 생물다양성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산림전용 방지 규정은 산림전용 및 황폐화로 인해 생산된 제품이 유럽연합의 소비자들에 의해 구매, 사용, 소비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연간 탄소 배출량을 최소 3,200만 미터톤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산림전용 방지 규정은 산림전용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전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용어 알아보기 Q&A

#### Q. 산림전용 방지(Deforestation-free)란?

산림전용 방지 규정에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산림 전용 대상이 아닌 토지에서 생산한 규제 품목을 포함 또는 사용하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특히 목재 및 목제품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산림 황폐화(forest degradation)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림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관련 특정 상품 및 제품의 시장 공급 및 수출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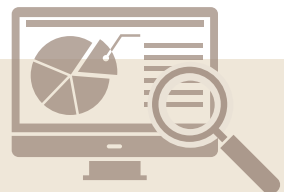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995/2010.

## 02

## 추진 경과



- 2021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새로운 규정 초안을 제안하였고, 이후 협의를 거쳐 2023년 6월 29일에 해당 규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 발효 후 18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30일부터 공급망에 참여하는 주체인 '운영자'와 '거래자'는 규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국가별 위험 수준도 이 시기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 2025년 6월 30일부터는 중소기업 규모의 '운영자' 및 '거래자'에게도 규정이 적용되어, 이들 역시 규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2025년 6월에는 새로 시행된 규정의 영향 평가가 진행되어,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규제 품목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03

적용 품목

- 산림전용 방지 규정은 전 세계 산림전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cattle) / 코코아(cocoa) / 커피(coffee) / 팜유(oil palm) / 고무(rubber) / 대두(soya) / 목재(wood) 7개 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 이들 품목을 포함·공급·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sup>2)</sup>하거나 공급<sup>3)</sup> 하는 행위,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역외로 수출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용어 알아보기 Q&A

**시장 출시 (placing on the market):** 유럽연합 시장에서 7개 품목 및 이들 품목을 포함·공급·사용하여 만든 관련 제품을 처음으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시장 공급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대가를 받거나 또는 무료로, EU 시장에서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관련 제품을 유통, 소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

- 규정 발효일(2023.06.29.)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목재 및 목제품 제외).
- 규제 대상 7개 품목 중 식품에 해당하는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의 파생 제품과 품목분류(HS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품목	관련 제품 및 품목분류	품목분류
 소 cattle	살아있는 소	0102.21(번식용), 0102.29(기타)
	신선·냉장 쇠고기	0201
	냉동 쇠고기	0202
	소의 식용 내장(신선·냉장)	0206.10
	소의 간(냉동)	0206.22





적용품목	관련 제품 및 품목분류	품목분류
 소 cattle	소의 기타 내장(냉동, 혀 및 간 제외)	0206.29
	기타 조제·보존처리한 소의 육·내장·피	1602.50
	소의 원피(신선·염장·건조·석회처리·산처리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것에 한하며, 유연처리·파치먼트 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처리한 것은 제외, 털 제거 또는 스플릿 여부에 상관없음)	4101
	소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에 한하고, 스플릿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	4104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 가공한 소의 가죽(파치먼트 가공 가죽 포함, 털을 제거한 것에 한하며 스플릿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음, 4114호 가죽 제외)	4107
 코코아 cocoa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에 한함)	1801
	코코아의 껍데기·껍질·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	1802
	코코아 페이스트(탈지 여부에 상관없음)	1803
	코코아 버터·유지류	1804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 제외)	1805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
 커피 coffee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음)·커피의 껍데기 와 껍질·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에 상관없음)	0901
 팜유 oil palm	팜넛트와 핵	1207.10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에 상관없음,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	1511
	팜핵유나 바바수유와 이들 분획물의 조유(정제 여부에 상관없음,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	1513.21
	그 밖의 팜핵유나 바바수유와 이들 분획물(정제 여부에 상관없음,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조유 제외)	1513.29
	팜넛트나 핵에서 나온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 모양인지 여부에 상관없으며, 2304호나 2305호의 것 제외, 식물성·미생물성 유지류를 추출할 때 생기는 것에 한함)	2306.60

적용품목	관련 제품 및 품목분류	품목분류
 <b>팜유</b> oil palm	순도 95% 이상의 글리세롤(건중량 기준)	2905.45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2915.70
	기타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 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015.90
	공업용 스테아린산	2823.11
	공업용 올레인산	2823.12
	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2823.19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2823.70
	 <b>대두</b> soya	대두(부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음)
채유에 적합한 대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1208.10
대두유와 그 분획물 (정제 여부에 상관 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 제외)		1507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 모양인지 여부에 상관없음)		2304

- 2) 시장 출시(placing on the market): EU 시장에서 7개 품목 및 이들 품목을 포함·공급·사용하여 만든 관련 제품을 처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3) 시장 공급(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대가를 받고 또는 무료로 EU 시장에서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유통, 소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것

## 04

## 규제 내용



## 가. 산림전용을 통한 생산 금지

- 산림전용 방지 규정은 규제 품목 및 파생제품이 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 7개 품목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 시장으로의 출시·공급 및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sup>4)</sup>이 금지됩니다.

## 규제 품목 및 제품의 산림전용 금지 조건

- 1 해당 제품은 산림을 전용한 형태로 생산되지 않아야 합니다.
- 2 생산국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생산되어야 합니다.
- 3 실사 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토지 사용권 · 환경보호 · 산림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포함한 산림 관련 규칙(목재 벌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제3자 권리 · 노동권 ·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 · 원주민의 권리에 관해 UN 선언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사전 인지 동의(FPIC)' · 세금, 부패 방지, 무역 및 관세 규정의 측면에서 생산국에서 적용되는 법률

## 나. 운영자 및 거래자의 이행 요구사항

- 규제 품목 및 파생제품의 공급에 참여하는 '운영자(Operator)'와 '거래자(Trader)'는 규정에서 정한 산림전용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1) 운영자의 의무사항

- 운영자는 산림전용 금지 조건 (①산림을 전용하지 않고 생산, ②생산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 ③ 실사 선언서 제공)에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본 규정에 명시된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운영자는 실사 결과 해당 제품이 산림전용 방지 규정을 준수한다고 결론 내려지면,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유럽연합 역외로 수출하기 전에 관할 당국에 실사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사 선언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유럽연합 시장 출시 및 역외 수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거래자의 의무사항

- 운영자 이외에 공급망에 참여하는 거래자는 규제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 및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자는 공급망 참여 주체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4) Regulation (EU) No 952/2013 269조에 따라 EU산 제품을 관세 영역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로, ▲가공(outward processing)을 위해 일시 수출하는 경우 ▲ 최종 사용 절차에 따라 출시된 이후 관세 영역 외부로 반출된 경우 ▲목적지에 관계없이 항공기 또는 선박 공급품으로 인도되었으며,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가 면제되고 이러한 공급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 ▲국내 운송 절차에 따라 출시된 경우 ▲EU 관세 영역 밖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경우는 '수출'로 간주하지 않음

-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요청할 경우, 거래자는 보관 중인 정보를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에 출시한 후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산림전용 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 당국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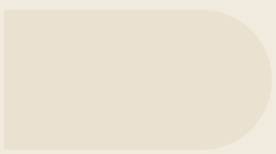
#### 다. 실사 의무사항

- 규제 품목 및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가 실사(Due Diligence)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운영자는 제품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특정 정보, 데이터 및 문서 수집 의무).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 및 문서에 근거하여 제품의 산림전용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위험 평가 의무). 만약 산림전용 위험이 확인된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절차 및 조치를 채택하여 수행해야 합니다(위험 완화 의무).
- 또한, 운영자는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하는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실사 시스템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고,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실사 완료 후, 운영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실사 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를 작성해야 하며, 실사 선언서에 포함된 참조번호는 세관에 제공되어 해당 제품의 반입을 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 실사 선언서 포함 내용

- 운영자 이름 및 주소, 수출입 제품의 경우 고유식별번호(EORI)
- 품목분류번호(HS Code), 자유 텍스트 설명(상호, 전체 학명 등), 양(순중량·부피·수량)
- '규제 품목'이 생산된 생산국 및 모든 토지의 위치 정보(소를 포함 또는 사용한 제품의 경우 위치 정보는 소를 사육한 모든 시설에 대해 기재). 제품이 서로 다른 토지에서 생산된 품목을 포함 또는 사용한 경우 모든 토지의 위치 정보는 9(1)조 (d)항에 따름
- 규정 4(8)조 및 (9)조에 따라 기존 실사 선언서를 참조하는 경우 해당 선언서의 참조번호
- '본 실사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운영자는 Regulation (EU) 2023/1115에 따라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제품이 규정 3조 (a)항 및 (b)항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만 발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By submitting this due diligence statement the operator confirms that due diligenc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U) 2023/1115 was carried out and that no or only a negligible risk was found that the relevant products do not comply with Article 3, point (a) or (b), of that Regulation.)'와 같은 문구
- 서명







# EU 산림전용 방지 규정 Q&A

- 
- Q1. 산림전용 방지 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Q2.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Q3. 7개 품목과 파생 제품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Q4. 7개 품목 이외에 규제 품목이 확대될 수 있나요 ?
- Q5. ‘운영자’와 ‘거래자’는 누구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Q6. 운영자가 실시하는 실사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Q7.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품목 및 제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있나요?
- Q8. 유럽연합 회원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 Q9.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Q10. 수출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산림전용 방지 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규정은 크게 9장(Chapter) 38조(Article) 및 2개 부속서(Annex)로 구성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sup>1)</su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제1장</b>	<b>일반조항</b>
제1조	주제 및 범위
제2조	정의
제3조	금지
<b>제2장</b>	<b>운영자 및 거래자의 의무</b>
제4조	운영자의 의무
제5조	거래자의 의무
제6조	공인 대리인
제7조	제3국에 설립된 사업자의 시장 출시
제8조	실사
제9조	정보 요구사항
제10조	위험 평가
제11조	위험 완화
제12조	실사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보고 및 기록보관
제13조	실사 간소화
<b>제3장</b>	<b>회원국과 관할당국의 의무</b>
제14조	관할당국
제15조	기술지원, 안내 및 정보교환
제16조	점검 수행 의무
제17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관련 제품
제18조	운영자 및 비(非)중소기업 거래자에 대한 점검

제19조	중소기업 거래자에 대한 점검
제20조	관할당국의 비용 회수
제21조	협력 및 정보교환
제22조	보고
제23조	임시조치
제24조	비준수 시 시정 조치
제25조	패널티
<b>제4장</b>	<b>관련 제품의 시장 진입 또는 퇴출 절차</b>
제26조	통제 수단
제27조	당국 간 협력 및 정보교환
제28조	전자 인터페이스
<b>제5장</b>	<b>국가 벤치마킹 시스템 및 제3국 협력</b>
제29조	국가 평가
제30조	제3국 협력
<b>제6장</b>	<b>인증된 우려사항</b>
제31조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인증된 우려사항
제32조	정의에 대한 접근
<b>제7장</b>	<b>정보시스템</b>
제33조	정보시스템
<b>제8장</b>	<b>검토</b>
제34조	검토

1)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forests/deforestation/regulation-deforestation-free-products\\_en](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forests/deforestation/regulation-deforestation-free-products_en)  
 법령 전문 조회: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115>



Q2

##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유럽연합 산림전용 방지 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운영자 및 거래자의 의무 사항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비중소기업 운영자 및 거래자에 대해서는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30일부터 규정이 시행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4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30일부터 규정이 적용됩니다.

Q3

## 7개 품목과 파생 제품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연구<sup>2)</sup>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된 농작물의 36%, 축산물의 25%가 유럽연합으로 수입되었습니다. 전 세계 산림전용 농작물 중 유럽연합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7%이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부문을 포함할 경우 이 비율은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 특히 7개 품목은 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되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 2021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된 냉동 쇠고기의 약 54%는 아마존 산림전용을 통해 생산된 브라질산<sup>3)</sup>이었으며, 같은 해 유럽연합으로 수입된 코코아 열매의 44% 및 코코아 페이스트의 54%는 산림 파괴, 불법 목재 거래, 아동 노동 등에 연루된 코트디부아르 생산품으로, 이로 인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또한, 2021년 유럽연합으로 수입된 커피의 11%는 산림전용 및 아동 노동 의혹이 제기된 베트남산이었으며, 광범위한 산림전용과 원주민의 동의 없이 점유된 토지에서 생산된 말레이시아 제재목 중 약 10%가 유럽연합으로 수입되었습니다.<sup>4)</sup>

2) The impact of EU consumption on deforestation: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EU consumption on deforestation(2013), European Parliament

3) 브라질 토지 피복 데이터 이니셔티브(<https://brasil.mapbiomas.org>)

4) 보르네오 프로젝트(<https://borneoproject.org>)



Q4

### 7개 품목 이외에 규제 품목이 확대될 수 있나요 ?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향후 약 2년간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 품목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규정 초안 제정 당시 고무를 제외한 6개 품목이 지정되었으나, 이후 고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제안한 산림전용 우려 품목인 돼지(swine), 양(sheep), 염소(goats), 가금류(poultry), 옥수수(maize)는 최종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규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 ‘운영자’와 ‘거래자’는 누구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운영자'는 지정된 규제 품목으로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주체입니다. 이는 제품을 가공하거나 상업적, 비상업적 소비자에게 유통하려는 목적, 또는 사업적 용도로 자체 사용하기 위해 규제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제3국 사업자가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경우, 해당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첫 번째 자연인 또는 법인이 운영자로 간주됩니다.
- '거래자'는 규제 품목으로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운영자를 제외한 공급망 참여 주체를 의미합니다. 거래자의 의무사항은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유럽연합에 본사, 영구 사업체, 등록사무소 등을 둔 법인이나 협회에 적용되므로, 국내에 소재한 수출업체에는 직접적인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제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유럽연합 현지 업체가 원활한 실사를 진행하고 제품 관련 정보를 보관하여 산림전용 방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의 규정 숙지 및 협력이 필요합니다.

## 운영자가 실시하는 실사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실사 활동은 크게 정보 요구사항(규정 제9조), 위험 평가(규정 제10조), 위험 완화 (규정 제11조) 조치로 구성됩니다.

### (1) 정보 요구사항 (Information requirements)

- 운영자는 제품의 시장 출시일 또는 수출일로부터 5년간 산림전용 방지 규정 준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 문서 등을 수집·정리·보관해야 합니다.
-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산림전용 방지 규정 준수 입증자료

- ① 제품 설명(상품명 및 유형 포함): 목재를 포함 또는 사용한 제품의 경우 종(species)의 일반명칭 및 전체 학명과 포함 또는 사용한 품목에 관한 설명 포함
- ② 양 : EU 시장 반입 또는 반출 제품의 경우 순중량(kg)·부피·수량으로 표시, 필요시 Council Regulation (EEC) No 2658/87 부속서1에서 정하는 보충 단위 사용
- ③ 생산국(또는 생산국의 일부 지역)
- ④ 제품에 포함 또는 사용된 '규제 품목'이 생산된 토지의 위치 정보(geolocation) 및 생산일자(또는 시간) 범위
  - 다른 토지에서 생산된 '규제 품목'을 포함 또는 사용한 제품의 경우 각 토지의 위치 정보 포함
  - 해당 토지에서 산림 전용(deforestation) 또는 산림 황폐화(forest degradation) 발생 시 해당 토지의 모든 '규제 품목' 및 관련 제품의 자격을 박탈
  - 소를 포함 또는 사용한 제품과 이러한 제품으로 생산된 또 다른 제품은 소가 사육된 모든 시설을 나타내는 위치 정보를 포함
  - '규제 품목'으로 생산한 부속서1 내 모든 관련 제품의 경우에도 토지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⑤ 제품을 공급받은 기업 및 개인의 이름·우편 주소·이메일 주소
- ⑥ 제품을 공급한 기업, '운영자', '거래자'의 이름·우편 주소·이메일 주소
- ⑦ 제품의 산림 전용 방지(deforestation-free) 사실을 나타내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
- ⑧ '규제 품목'이 생산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된 사실을 나타내는 충분히 결정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 (7개 품목 생산 목적을 위한 해당 지역의 사용 권리 약정서 포함)

## II. EU 산림전용 방지 규정 Q&A

### (2) 위험 평가 (Risk assessment)

- 운영자는 수집된 정보와 서류를 기반으로 제품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운영자는 위험 평가를 실시할 때, 국가 평가에 따른 위험 할당 · 생산국 내 산림의 존재 · 생산국 내 원주민의 존재 등 14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 평가 결과 제품이 산림전용 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은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 ☆ 위험 평가 시 고려사항

- ① 제29조(국가 평가)에 따른 관련 생산국(또는 그 일부)에 대한 위험 할당
- ② 생산국(또는 그 일부)에 있는 산림의 존재
- ③ 생산국(또는 그 일부)에 있는 원주민의 존재
- ④ 생산국(또는 그 일부)에 있는 원주민과의 성실한 협의 및 협력
- ⑤ '규제 품목'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의 사용 또는 소유권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원주민의 합리적 주장의 존재
- ⑥ 생산국(또는 그 일부)에 만연한 산림 전용 또는 산림 황폐화의 존재
- ⑦ 9(1)조(정보 및 문서 요구사항)에 언급된 정보의 출처, 신뢰성, 유효성 및 기타 사용 가능한 문서에 대한 접근
- ⑧ 부패 수준, 문서 및 데이터 위조, 법 집행력 부족, 국제 인권 침해, 무력 충돌 또는 UN안전보장이사회나 EU 집행위에서 부과한 제재의 존재와 같이 생산국 및 원산지(또는 그 일부)와 관련한 우려
- ⑨ 제품 가공단계 및 공급망의 복잡성(특히, 제품과 '규제 품목'을 생산한 토지 간 연결의 어려움)
- ⑩ 본 규정 우회 위험 또는 산림 전용이나 산림 황폐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원산지 미상 제품과의 혼합 위험
- ⑪ 본 규정의 이행을 지원하는 위원회 전문가 그룹 회의의 결론
- ⑫ 31조(자연인 또는 법인의 입증된 우려사항)에 따라 제출된 입증된 우려사항 및 관련 공급망 내 '운영자' 또는 '거래자'의 규정 미준수 이력에 관한 정보
- ⑬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위험을 가리키는 모든 정보
- ⑭ 본 규정 준수에 관한 보충 정보(인증 또는 제3자 검증에 의한 정보, 유럽연합 의회 Directive(EU) 2018/2001 30(5)조에 따른 자율체계 포함)

- 운영자는 최소 연 1회 이상 위험 평가를 문서화하여 검토하고, 관할 당국이 요청할 경우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3) 위험 완화(Risk mitigation)

- 위험 평가 결과 해당 제품이 부적합할 위험이 없거나 무사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내포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위험 완화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 완화 조치

- 1 추가적인 정보, 데이터 또는 문서 요구
- 2 독립적인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
- 3 9조의 정보 요구사항과 관련한 기타 조치

- 운영자는 최소 연 1회 이상 위험 평가를 문서화하여 검토하고, 관할 당국이 요청할 경우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7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품목 및 제품을 유럽연합으로 수출할 수 있나요?

Q&amp;A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산림전용 위험도를 기준으로 각 국가를 분류할 예정입니다.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3국의 위험도는 '고위험·저위험·표준위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규정 발효(2023.06.29)와 동시에 모든 국가는 '표준위험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 산림전용 금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규제 품목과 파생제품을 생산할 위험이 높은 국가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며, 이에 반해 이러한 위험 수준이 낮고 충분한 근거로 규정 준수 사실이 입증된 국가는 '저위험 국가'로 분류됩니다. 고위험 및 저위험으로 분류되지 않는 국가는 '표준위험 국가'에 해당합니다.
- 각 국가의 위험도는 산림 전용 및 산림 황폐화 비율 · '규제 품목'과 관련한 농지의 확장 비율 · '규제 품목' 및 관련 제품의 생산 트렌드를 평가하여 분류됩니다.
-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연간 검사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생산된 규제 품목을 포함하거나 사용하여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과 운영자에 대해 최소 9%의 비율로 연간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표준위험은 3%, 저위험 1%로 위험 수준이 낮을수록 검사 비율 또한 낮아집니다. 저위험 국가의 경우에도 공급망의 복잡성과 규정 우회 위험, 고위험 또는 표준위험 국가의 제품과 혼합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사 자체는 동일하게 실시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Q8

유럽연합 회원국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Q&A

- 각 회원국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산림전용 방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하나 이상의 규제 기관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은 운영자와 거래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특히 실사 시스템과 제품의 규정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문서의 검토를 담당하게 됩니다.
- 각 기관에서는 감독 및 검사 활동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최소 10년간 보관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30일까지 공개하는 회원국별 전년도 규정 이행 상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집행위에 보고하게 됩니다.
- 규제 기관의 지정이 완료되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별로 지정된 규제 기관의 상황을 온라인으로 공개 및 업데이트할 방침이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Q9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Q&A

- 운영자와 거래자는 유럽연합 내 규정 위반 시 벌금, 이익 몰수, 공공사업 참여 제한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 미준수 사실이 확인되면, 규제 기관은 운영자나 거래자에게 미준수 요건 시정 · 해당 제품의 출시 금지 · 회수 · 자선 또는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거나 폐기 등의 시정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나 거래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벌금은 환경 피해 정도와 규제 품목 및 제품의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 최대 벌금액을 벌금 부과 이전 회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의 4% 이상으로 산정합니다.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벌금 수준은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제품 및 해당 제품을 통해 얻은 이익의 몰수, 최대 12개월간 공공 조달 또는 입찰 참여 제한, 보조금 수령 기회 박탈, 심각한 위반 또는 반복된 위반의 경우 EU 시장 출시 금지 및 실사 간소화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럽연합의 산림전용 방지 규정은 대규모 산림을 보유한 국가나 7개 규제 품목의 주요 생산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 품목의 생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對유럽연합 수출 비중이 미미하여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현재 규정 논의가 초기 단계이므로 향후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2024년 말 예정된 국가별 위험도 분류를 앞두고 있어 규정의 구체화와 변경 사항에 대해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공급업체에 대한 현지 수입업체의 검증 및 감독 강화가 예상되므로 실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 품목과 파생 제품을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업체 외에도 원재료 공급업체, 잠재적 공급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유럽연합 규정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라도 유럽연합 내 규정 적용 대상(운영자 또는 거래자), 혹은 1차 벤더업체의 요구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규정 준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